

현장과학교육 투고 규정

제 1 조 (목적)

현장과학교육 학회지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장과학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투고 내용)

투고 원고의 내용은 초중등 학교 및 대학교의 과학 교육과 관련된 현장과학교육 연구 논문과 현장과학교육 자료를 포함한다. 현장과학교육 연구 논문은 과학탐구, 실험실습, 교수학습 자료, 교육과정, 교수법, 현장과학교육이론 등을 포함하며, 현장과학교육 자료는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자료, 실험실습 활동 자료, 과학 동아리 활동 자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논문과 현장과학교육 자료는 다른 곳에 게재된 적이 없는 독창적인 내용을 수록해야 하며, 다음의 투고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 3 조 (현장과학교육 연구 논문의 작성 요령)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독자가 반복하였을 때 재현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기술되어야 한다. 원고의 양은 6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논문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저자의 주소가 소속 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 짧은 제목(running title), 주제어(key words).
 - (2) 본문은 서론, 방법, 결과 및 논의, 결론 및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 (3) 참고문헌
 - (4) 그림에 대한 설명
 - (5) 도표
 - (6) 그림
2. 논문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저자의 주소가 소속 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
 - (2) 초록은 100-200 단어 사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 (3) 주제어의 개수는 한글, 영문 각각 2개 이상 5개 이하어야 한다.
 - (4) 본문은 서론, 연구 방법, 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 (5) 참고문헌 (6) 도표 (7) 그림

제 4 조 (현장과학교육 자료의 작성 요령)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독자가 따라 했을 때 재현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쉽게 기술되어야 한다. 원고의 양은 4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1. 논문 원고는 다음 항목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1)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저자의 주소가 소속 기관과 다를 경우에는 그 현 주소를 각주에 표시함), 짧은 제목(running title), 주제어(key words).
- (2) 본문은 서론, 방법, 결과 및 논의, 결론 및 제언으로 나누어 기술하되 불필요한 항은 생략할 수 있다.
- (3) 참고문헌
- (4) 그림에 대한 설명
- (5) 도표
- (6) 그림

제 5 조 (투고)

1. 문서 소프트웨어: 2002년 이후에 나온 아래한글 사용을 권장한다.
2. 제출: 원고 파일을 교신 저자의 이메일, 우편 주소와 함께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낸다. 보낼 주소는 jeon@snu.ac.kr 이다. 인쇄물을 보낼 필요가 있으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전동렬(우편번호 151-748)”로 보낸다. 원고 파일을 보낼 때 논문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한 편지(cover letter)를 함께 보내는 것이 좋다. 논문이 접수되면 접수 번호를 이메일로 교신저자에게 보내다. 3인의 심사를 거쳐 수정 절차를 끝내고 게재가 결정되면 저자는 논문 최종본을 문서파일로 제출하며, 이 때 고해상도의 그림, 그래프, 도면, 표는 별도의 파일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참고문헌)

1. 원고에 인용된 문헌과 참고문헌에 나열된 모든 문헌은 서로 일치해야하며, 참고문헌에 한글인 경우는 저자명의 "가나다" 순으로, 영문인 경우는 저자명의 "알파벳" 순으로 배열하며, 한글 참고문헌을 앞에 배열한다.
2. 본문에서 참고문헌의 인용은 다음의 예에 따른다.
 - (1) 2인 이하인 경우: 이규석(1998), 김창석과 문제인 (2006), Park and Lee(1984), (신동희, 1999), (Lee and Kim, 1998)
 - (2) 동일 저자 및 동일 연도이며 2편 이상인 경우: 정희옥(1999a, 1999b)

- (3) 3인 이상인 경우: Epstein et al.(1977), 김정률 등 (1999), (Park et al., 1989)
3. 참고 문헌 표기 양식은 다음 형식을 따른다.
- (1) 김창석, 문재인 (2006) 패러데이 법칙과 금속 탐지기. *새물리*. 23: 157-159.
- (2) Hewitt PA (1996) Conceptual Physics, 9th Ed. Addison Wesley, New York), p 15.
- (3) White B and Frederiksen J (1990) Causal Model progressions as a foundation for intelligent learning environments. *Artificial Intelligence* 24: 99-157.
- (4) Smith PA, Spencer CD and Jones DE (1992) Force Concept Inventory. *Phys. Teach.* 30: 141-158.
- (5) <http://www.aaas.org/news/releases/2006/1213solarbook.shtml>
4. 웹 페이지는 수명이 짧으므로 되도록 인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제 7 조 (표와 그림)

1. 그래프, 그림, 사진은 모두 그림으로 명명한다.
2. 표와 그림은 본문에 그 위치를 표시하고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기입한다.
3. 그림은 별도의 파일에 고해상도의 전자출판이 가능한 형태로 제출한다. 그림 속의 문자나 숫자는 축소될 것을 고려한 크기로 기입하고, 그림에 대한 제목 및 설명은 별도의 용지에 기입한다.

제 8 조 (부록)

컴퓨터 프로그램, 참고자료 등을 부록으로 붙일 수 있다. 부록으로 실기에 너무 큰 자료는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 9 조 (단위)

국제표준(SI)단위를 사용한다. 숫자와 단위 사이는 한 칸을 띠운다. 단 %와 ℃는 숫자에 붙여 쓴다.

제 10 조 (교정)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때에는 원고의 개정을 할 수 없다.

제 11 조 (게재료와 출판비)

1.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학회가 규정하는 게재료를 지불해야 하며 별쇄본(reprint) 30부를 받는다. 규정된 부수 및 형식 이외의 별쇄본에 대해서는 초교시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실비를 학회 규정에 따라 저자가 추가 부담한다.
2. 불가피하게 아트지를 사용해야 할 경우와 칼라 인쇄를 할 경우에는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3. 규정된 쪽수를 초과하는 경우 저자가 추가 게재료를 부담한다.

제 12 조 (저작권)

대표자는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저작권을 한국현장과학교육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부 칙(2007.8. 25)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유효하다